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산공개 대상 법관 및 감사의 기준 변경 등〉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8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 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6.
3. 회부연월일 : 2024. 8.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재산형성 과정 검증에 필요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 및 검사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

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1) 재산 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의 기준을 현행 “부장관 사급 이상의 법관”에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법관”으로, 검사의 기준을 현행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검사”로 각각 변경하고(안 제10조제1항제5호),

2) 등록의무자의 재산 등록사항 열람·복사 허가 사유로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및 “의정활동으로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5. <u>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u> 6. ~ 13. (생략) ②·③ (생략)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4. (생략)	5. <u>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법관과 검사</u> 6.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제4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경우,----- ----- -----필요한 경우 또는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3.·4.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1) 재산 공개대상 법관 및 검사의 기준 변경(안 제10조제1항제5호)

2020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 직위를 두던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서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직위를 열거하고 있고,

검사의 경우 「검찰청법」 제28조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보직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직위를 열거하고 있음.

현재 법관 및 검사의 경우 이들 규칙 및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위¹⁾에 보직된 법관과 검사에 대해 재산 등록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산 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범위를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

1) (법관) :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삭제, 13. 삭제, 14.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15.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검사) :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삭제, 12. 삭제,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

정안에 따를 경우 일정한 직위에 보직된 법관이나 검사에 한하여 재산 등록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 대비 재산 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수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²⁾³⁾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적 수단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공직자윤리법」의 규제적 성격과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재산 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범위를 법률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주식의 취득 제한, 선물 신고, 취업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공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해당함.

따라서, 그 내용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공무 집행의

2) 법원행정처 및 대검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및 검사를 기준으로 재산 공개대상자를 추산하면, 법관의 경우 2024년 현재 149명에서 1,033명 수준으로, 검사의 경우 2024년 현재 58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재산 공개대상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3)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공정성 확보 등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평등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부합하여야 함.

현행 제도는 이같은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책임이나 권한의 크기에 따라 규제의 범위나 정도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책임이나 권한은 직급이나 직책 또는 직위에 근거하여 부여된다는 점에서 재산 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이나 검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직위에 보직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법관과 검사의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직급 체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보직과 관련하여 그 책임과 권한에 따라 차별성이 부여된 직책 또는 직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직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재산 공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일정한 직위나 직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다른 재산 공개대상자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도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윤리 확립이라는 측면과 다른 재산공개 대상 직종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재산 공개대상자는 재산내역이 공개되고,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부담하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서 엄격한 취업 제한을 받는 등 사생활 침해 및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산 공개대상자의 범위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관과 검사를 일률적으로 재산 공개대상자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관과 검사에 대해서만 경력을 기준으로 재산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법무부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도 유사한 입장으로, 법무부는 경력 20년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의할 경우 재산 공개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고 법관 및 검사에 한하여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재산 공개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법 체계에 반하며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대검찰청은 책임과 권한이 크지 않은 자들이 재산 공개대상자로 포함되게 되며, 과도하게 많은 법관과 검사가 재산 공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일정 기간의 경력만으로 재산 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과 검사를 정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산 공개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재산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조일원화⁴⁾ 및 평생법관제⁵⁾에 따라 상당한 경력을 가진 법관이 임용되고 계속 법원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재산 공개대상자인 법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전담법관⁶⁾을 임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른 경우 전담법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산 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어 지원자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법관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법조경력을 쌓은 변호사자격소지자 중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

5) 법원장을 마친 고위 법관이 정년까지 법원장이 아닌 직위에서 재판 업무를 맡는 제도

6) 법조 경력이 풍부하고 연륜이 높은 15년 또는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전담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등록사항 열람·복사 허가 사유로 인사청문 관련 사항 명시(안 제10조제4항제2호)

현행법 제10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⁷⁾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이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⁸⁾

7)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13. (생략)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8)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③ (생략)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이 중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열람·복사 허가사유는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동 열람·복사 허가사유에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법」 제12조9)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인사청문제도의 취지 상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국회법」 제128조10)의 해석 상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9)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10) 「국회법」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관련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행법 제10조제4항제2호는 「국회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이 재산 등록사항의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서도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로 재산 등록사항을 요구하였을 경우 열람·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국회법」 제128조에 대한 특별법 규정으로서 자료 제출의 기한이나 미제출 시 경고 조치 등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를 재산 등록사항의 열람·복사 허가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그 밖에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재산 등록사항의 열람·복사 허가사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서 그와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재산 등록사항의 열람·복사가 가능한 별도의 허가사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현행법 제10조제4항제2호 및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입법 실익이 크지 않으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률 개정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의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람·복사 허가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열람·복사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재산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열람·복사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명문화할 실익이 있으나,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아닌 ‘국회의원의 요구’만으로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반하며 재산공개의 기본권 제한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11)

문 의 처

02)6788-5342

11) 동 의견은 현행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열람·복사 허가사유를 1)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